<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석유화학 Big Deal 해법은?

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Big Deal 실현을 위한 채권단의 손실부담 요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다.

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Big Deal에 임하는 자세가 경쟁력 강화나 산업합리화보다는 대규모 부채를 국민부담으로 떠넘김으로써 손실을 줄여보자는 의도였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막상 석유화학 부문에서까지 손실부담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처구니없다고 밖에 지적할 수 없다.

1980년대말 석유화학 투자가 자유화된 이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부실투자를 감행했던 현대와 삼성이 이제는 각각 3조원 안팎의 부채를 안음으로써 대규모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며 손실부담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될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 또는 무책임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와 삼성은 손실부담 거부의 근거로 △경영권 포기 △인원 20% 감축 △자산 1조2000억원 매각 방침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ADL의 자산평가 결과 1조8600억원에 달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순기업가치를 Big Deal 성사를 위해 일본 Mitsui 컨소시엄이 선정한 KPMG의 평가대로 1조원으로 낮추어주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기존주주의 추가 손실부담을 거부하겠다는 옹색한 변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경영권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고, 종업원도 20%가 아니라 30-40%는 줄여야 하며, 자산매각은 일부 실현되었을 뿐이다. 순기업가치 1조원도 평가기관의 시각 및 평가방법의 차이로 기업가치가 줄어든 것이지 결코 손실부담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 현대그룹이 자체적으로 생존하던가 아니면 손실부담을 통해 Big Deal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Work-Out 등을 통한 대주주 지분의 감자와 경영권 박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1999년말 기준 부채비율 200%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그룹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중단하고 기존채무를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삼성 및 현대 그리고 통합추진본부가 채권단에 요구한 △부채 5000억원 출자전환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산업은행을 통한 15억달러 대출방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손실부담이 우선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와 감자금액 수준의 추가출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현대와 삼성이 손실부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제기한 것처럼 삼성 및 현대그룹을 경영에서 배제함은 물론 그룹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이고, 두 회사의 회계처리과정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순수한 영업손실이 아닌 비영업적 손실에 대해서는 대주주 및 그룹총수로부터 강제회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회사통합과 외자유치를 맡기는 방안은 그 다음이다.

1998년 기준 총매출 2조5000억원에 매출의 2배가 넘는 5조70 00억원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는 현대와 삼성이 이러쿵 저러쿵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이대며 석유화학산업 합리화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며, 국민일반도 납득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경제를 IMF 수렁으로 떨어뜨린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여천석유화학으로의 NCC 통합 및 폴리머 전문기업 설립과정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부풀려 평가했다는 설이 심심치않게 거론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1월15일 현재 통합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회계장부를 정밀검토해 순수한 영업손실과 사취부분을 가려내고 그에 걸맞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을 지원받아야 할 부실기업들이 국민 및 주식투자자들을 속이고, X배짱을 내미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쟁력 강화는 헛구호일 따름이다.

<화학저널 1999/11/22>